

성남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, 「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8조, 제21조 및 「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22일

성 남 시 장

제1조(지정목적) 「시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사업」을 통해 난립한 간판의 정비·개선을 위하여 『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』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등의 표시(설치) 방법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비시범구역의 지정)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(이하 “정비시범구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한다.

1. 위치: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19(상가동)
2. 구역: 별도 도면 표기

제3조(적용범위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3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8조 및 「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시 조례”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의 업소간판(광고물등)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

제4조(일반적인 표시방법) ① 정비시범구역 내 모든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“광고물등”이라 한다)은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. 단, 법에 의한 신고 배제 및 간판 수량 산정 제외 광고물등의 경우 표시 계획에 대하여 구청[광고물관리(허가)팀]과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(벽면 이용 간판 또는 돌출간판)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도로의 굵은 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한해 간판 1개(벽면 이용 간판)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.
2. 의료시설·약국·이미용업소는 벽면 이용 간판 이외에 픽토그램형(“+”, 약, 싸인볼에 한함) 돌출간판을 1개 추가할 수 있다.
3. 이·미용업소(싸인볼에 한함) 표시등의 규격은 지름 30센티미터 이내, 세로 길이 10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.
4. 벽면 이용 종합안내간판 설치에 대해서는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신축건물은 외벽의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쉽도록 간판의 게시시설(벽면 이용 간판·돌출간판 설치틀) 설치를 권장한다.

④ 커튼월【Curtain Wall(비내력 외벽)】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한다. 다만,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(안전성, 미관성 등)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.

⑤ 광고물등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·크기·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 및 설치하여야 한다.

⑥ 광고물등의 색채는 원색 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, 특히 검정색과 빨강색의 경우 간판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, 문자는 이에 준용하며, LED 사용을 권장한다. 또한 「상표법」 및 「디자인보호법」 등에 따라 등록된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표시를 허용한다.

⑦ 모든 광고물, 게시틀,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,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⑧ 모든 광고물의 디자인에는 광고물의 시인성(視認性)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 또는 오브제(object)형태의 표시를 권장한다.

제5조(광고물등의 종류별 표시방법) 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① 벽면 이용 간판 표시방법

1. 간판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 등으로 한다. 다만, 1층의 경우에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된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.
2. 3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한다.
3. 건축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 글자 크기(정사각 기준)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가로크기는 업소 가로폭의 100분의 80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입체형은 45센티미터 이내, 판류형은 8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.
 - 나. 3층까지 60센티미터 이하, 4층 이상 5층 이하는 65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업소를 상징하는 도형은 100분의 30 이내까지 더 크게 설치할 수 있다.
 - 다. 4층 이상 5층 이하 건축물의 최상단에는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(건물명 등)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.
4.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(캐노피 포함)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.

② 돌출간판 표시방법

1.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정하여 설치가 가능하다.
2. 1면의 면적이 0.56제곱미터 이내,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.
3. 간판의 크기는 가로 80센티미터 이하, 세로 10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.
4. 가로형, 박스형은 가로쓰기를, 세로형은 세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5. 각각의 업소는 독립적으로 탈·부착이 가능하여야 하며, 연립형식(하나의 간판에 열거식으로 표시하는 것 포함)은 금지한다.

③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

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. 다만, 해당건물의 업소수, 광고물의 규격, 주변과의 조화,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부지 내에 지주이용종합안내판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로, 조형물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하로 설치한다.

④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

1. 창문 이용 간판 표시를 금지한다.
2. 건축물의 주 출입문 및 해당업소의 출입문, 창문, 쇼윈도우에 설치(내·외부)하는 LED 전광판, 네온사인, 시트지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.

⑤ 공연간판의 표시방법

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. 다만, 복합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.

⑥ 옥상간판의 표시방법

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가.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표시도형
- 나.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

⑦ 벽면 이용(세로형) 간판·에드벌룬의 표시방법

벽면 이용(세로형) 간판·에드벌룬의 표시를 금지한다.

⑧ 현수막의 표시방법

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. 다만 지정계시대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⑨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

1. 네온류, 전광류 등은 점멸 또는 화면변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, 광원에 덮개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2.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,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3.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- 4. 벽면 이용 간판, 돌출간판의 문자는 LED자재 사용을 권장한다.
- 5. 1층에 한하여 직접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2층의 경우 인도의 경관조명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6조(광고물심의 등) ① 법, 영,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 산업 진흥 조례(이하 “도 조례”라 한다), 시 조례,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성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심의 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, 원색 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,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의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적용의 특례) ① 시장은 영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이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8조(사후관리)

- ① 고시지역 내 광고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고시 기준에 준해서 간판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.
- ②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, 매매, 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정비시범구역임을 명시하여 이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를

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는 신규, 연장 및 변경 허가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에 적용한다. 다만,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 만료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.

제3조(기타)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법, 영, 도 조례 및 시 조례”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

붙임1

□ 정비시범구역 지정 위치도

